

유상증자 결의

1. 신주의 종류와 수	보통주 (주)	328,571
	기타주 (주)	-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		5,000
3. 증자 전 발행 주식총수 (주)	보통주 (주)	2,300,000
	기타주 (주)	-
4. 자금조달의 목적	시설자금 (원)	-
	운영자금 (원)	1,642,855,000
	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	-
	기타자금 (원)	-
5. 증자방식		제3자배정 유상증자

【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】

6. 신주 발행가액	보통주 (원)	5,000
	기타주 (원)	-
7.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(%)		-
8.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		정관 제10조 제2항
9. 납입일		2023-12-26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		2023-12-26
11. 신주권교부예정일		-
12. 신주의 상장 예정일		-
13.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		아니오
-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		아니오
-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인 주식인 있는지 여부		해당 없음
-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 자 가액	현물출자가액(원)	-
	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(%)	-
- 납입예정 주식 수		-

14.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	해당 없음	
15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2023-12-26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0
	불참(명)	1
- 감사(감사위원)참석 여부	부	
16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 시 그 사유	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, 제119조에 의한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	
17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부	
1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

【제3자 배정 근거, 목적 등】

제3자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	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
<p>제10 조(신주인수권)</p> <p>1)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2)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3)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	<p>운영 자금 조달</p>

【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

제3자 배정 대상자	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선정경위	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	배정 주식수(주)	비고
개인	관계 없음	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	부	328,571	